

학교법인 동서학원

2019학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록

구 분	이 사	감 사
임원정수	8 인	2 인
재직이사	8 인	2 인
참석이사	7 인	1 인

1. 일 시 : 2019년 3월 27일(수), 오후 2:00~3:25,

(회의소집 통보일: 2019년 3월 19일)

2. 장 소 : 법인 회의실

3. 임원 출·결 사항

가. 참석임원

- 이사(7명) : 박동순, 임효진, 장제국, 추만석, 양상백, 이순걸, 강정호
- 감사(1명) : 김용성

나. 결석임원

- 이사(1명) : 오병태
- 감사(1명) : 김희규

4. 회의안건

(1) 심의안건

- 1) 법인 개방이사(강정호 2019.04.09, 이순걸 2019. 6.26) 및 추천감사(김희규 2019.06.03) 임기 만료에 따른 개방이사 및 추천감사추천위원회 구성, 법인추천위원 2명 추대와 개방이사(4명) 와 추천감사(1명) 후보 추천의뢰 심의 건
- 2) 사상구노인복지관 본관 및 다누림노인보호센터의 2018년도 결산 심의 건
사상구노인복지관 분관의 2018년도 결산 심의 및 2019년도 사업계획변경(안) 및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(안) 심의 건

3) 동서대학교의

- ① 교원인사규정 개정(안) 심의 건
- ② 기자재 및 민석도서관 불용자료 폐기 승인 심의 건
- ③ 전임교원 새로임용 및 승진임용(정년보장 포함) 심의 건

4) 경남정보대학교의

- ① 2019년도 유니테크(Uni-Tech)사업 정부지원금 지급 신청을 위한 이행보증보험가입신청 승인 심의 건
- ② 전임교원 승진임용(정년보장 포함) 심의 건

5) 부산디자털대학교의

- ① 직원인사규정 및 직원인사고과규정 개정(안) 심의 건
- ② 전임교원 승진임용(정년보장 포함) 심의 건

(2) 보고사항

5. 회의내용 :

- (1) 이사장의 사회로 참석인원을 점검한 후 성원이 됨으로 개회를 선언하다.
- (2) 이사장이 오늘 회의안건이 동시대학교에서 요청한 교원인사규정 개정(안) 승인 심의 건이라고 간략하게 설명한 후 토의 및 결의에 들어가다.

간서명 대 표	이사장	박동순	이사	강정호	이사	이순걸
------------	-----	-----	----	-----	----	-----

6. 토의 및 결의 : 동서대학교 교원인사규정 개정(안) 심의 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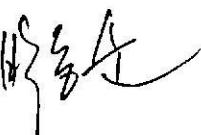
- (1)이사장은 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을 행정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토록 지시하다.
- (2)행정실장은 동서대학교에서 요청한 교원인사규정 개정 내용은 교육전담교원 및 연구전담교원 신설에 따른 개정사항이라고 말하고, 관련 규정(안) 신·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자세히 설명한다.
- (3)이사장은 참석한 이사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.
- (4)임효진이사가 개정 규정(안)을 검토한 후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를 하다. 추만석이사가 동의에 재청하니, 양상백이사가 삼청하고 나머지 이사 전원이 찬성하므로 가결이 되다.
- (5)이사장은 이사들의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, 동서대학교에서 요청한 교원인사규정 개정(안) 승인 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.
- (6)이사장은 이사들에게 간서명 대표를 정하자고 하자, 추만석이사가 이사장, 강정호, 이순걸이사를 추천하자 다른 이사 모두가 찬성하므로 가결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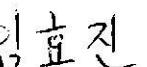
7. 폐회 : 이상과 같이 토의 및 결의를 마치고, 이순걸이사의 동의로 오후 3시25분에 이사장은 폐회를 선언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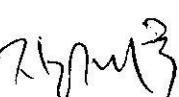
위 사실을 확인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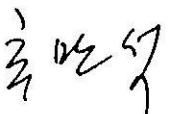
2019. 03. 27.

학교법인 동서학원 이사회

이사장 박동순 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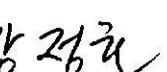
이사 임효진 

이사장제국 

이사 추만석 

이사 양상백 

이사 이순걸 

이사 강정호 

감사 김용성 

동서대학교 교원인사규정 개정(안)

1. 교원인사규정 개정 사유

- 교육전담교원 신설
 - 연구전담교원 신설

2 교원인사규정 개정(안)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	비고
<p>제 2 조(교원의 종류) ①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.</p> <p>② 전임교원은 정년트랙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. 단,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은 대외적으로 '비정년트랙'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가. 정년트랙전임교원 : 기간제 임용교원, 연봉계약제 교원 외국인교원</p> <p>나. 비정년트랙전임교원 : 산학협력전담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외국인교원</p>	<p>제 2 조(교원의 종류) ①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.</p> <p>② 전임교원은 정년트랙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. 단,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은 대외적으로 '비정년트랙'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가. 정년트랙전임교원 : 기간제 임용교원, 연봉계약제 교원 외국인교원</p> <p>나. 비정년트랙전임교원 : 산학협력전담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 <u>교육전담교원</u> <u>연구전담교원</u> 외국인교원</p>	
<p>③ - ⑥ (생략)</p> <p>⑦ <u>산학협력전담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</u></p>	<p>③ - ⑥ (생략)</p> <p>⑦ <u>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</u></p>	자구 신설
		(7) 항 전문 개정

3) 부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간사명 대 표	이사장		이사	강정호	이사	이승걸
------------	-----	---	----	-----	----	-----